

의안번호	2205345
의 퇴 인	이준석의원
회 답 일	2024. 12. 6.
추 계 번호	24B487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등록대상동물 및 맹견에 대한 관리와 안전조치를 위하여 동물관리지도원을 위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3억 3,000만원, 2030년 12억 9,5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65억 1,000만원(연평균 13억 2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동물관리지도원 (안 제22조의2 신설)	1,330	1,295	1,295	1,295	1,295	6,510	1,302

주: 1. 개정안은 동물관리원의 직무수행경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개정안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무수행경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함

2. 동 추가재정소요는 전액 지방비임

자료: 현행법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 운영사례를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2조의2 신설(동물관리지도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대상동물 및 맹견에 대한 관리와 안전조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동물관리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음(제1항) 동물관리지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음(제2항) - 제16조제1항·제2항에 따른 등록대상동물 관리와 준수사항 이행 여부 감시 및 계도 - 제21조제1항에 따른 맹견 관련 준수사항 이행 여부 감시 및 계도 - 제22조 각 호의 출입 금지 장소에 맹견 출입 감시 및 계도 - 그 밖에 등록대상동물 및 맹견의 관리와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라 동물관리지도원을 위촉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관리지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제5항)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22조의2 신설 (동물관리지도원)	○	• 동물관리원 직무수행경비 및 교육 비용 - 현행법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감시원 운영사례 참고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본 추계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동물관리원의 직무 수행 경비를 지급하고, 사전 교육을 실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추계
 - 개정안은 동물관리원의 직무수행경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개정안의 입법목적은 달성하기 위하여 직무수행경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함
-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동물관리지도원(안 제22조의2 신설)

- 개정안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대상동물 및 맹견에 대한 관리와 안전조치를 위하여 일정 자격을 갖춘 자를 동물관리지도원을 위촉하고, 그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간 개물림 사고로 이송된 사람은 연평균 2,183.2명 규모임
- ※ [참고자료 1] 연도별·지역별 개물림 사고 이송 현황 참고

[표 2] 최근 5년간 개물림 사고 이송 현황: 2019~2023년

(2024년 3월 기준, 단위: 명)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
개물림 사고 이송	2,154	2,114	2,197	2,216	2,235	2,183.2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방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본 추계는 현행법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 운영 규정¹⁾ 등을 참고하여 동물관리지도원의 직무수행경비 및 사전교육 소요경비에 대하여 추계

- (명예동물보호관)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를 위한 지도·계몽 등을 위하여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의 신청을 받아 위촉
 - 위촉 주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 2023년 기준 644명의 명예동물보호관이 위촉됨
 - ※ [참고자료 2] 2023년 지역별 명예동물보호관 운영 현황 참고
- (활동수당) 1일 50,000원 범위 내에서 지급²⁾
- (활동일) 1일 4시간 이상의 활동에 한하여 1인당 연 50일의 범위 내

1) 법 제90조(명예동물보호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를 위한 지도·계몽 등을 위하여 명예동물보호관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명예동물보호관의 자격, 위촉, 해촉, 직무, 활동 범위와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시행령 제28조(명예동물보호관의 자격 및 위촉 등) ① ~ ④ (생략)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명예동물보호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명예동물보호관 운영규정」 [시행 2023. 12. 1.]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3-89호]

제7조(명예동물보호관의 활동수당 등 지급) ① 위촉기관의 장은 명예동물보호관이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른 임무를 수행한 경우 활동수당을 1일 50,000원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활동수당과 별도로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1일 4시간 이상의 활동에 한하여 1인당 연 50일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시행령 제28조제3항제1호의 활동은 위촉기관의 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6조에 따라 위촉기관의 장이 실시한 교육에 참석한 명예동물보호관에게 수당을 지급할 경우에는 제1항의 활동수당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2) 법 제90조(명예동물보호관) ① ~ ② (생략)

③ 명예동물보호관의 자격, 위촉, 해촉, 직무, 활동 범위와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교육) 6시간 이상 동물보호법령, 동물보호·복지 정책의 이해 등 필수교육 이수
 - －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명예동물보호관 의무교육은 <동물사랑배움터>에서 온라인 교육³⁾만 진행 중이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명예동물보호관 오프라인 설명회(연1회) 등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표 3] 명예동물보호관 위촉 및 활동 현황: 2021~2023년

(단위: 명, 건)

구분	명예동물 보호관 (수)	활 동				
		계	교육·홍보 상담·지도	동물학대행위 신고정보 제공	보호관 직무 수행 지원	피학대 동물 구조·보호
2023	644	4,068	2,358	93	1,285	332
2022	606	3,238	2,045	98	996	99
2021	573	2,931	1,661	213	971	86

자료: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 「2023년 동물의 등록, 구조·보호 등 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 2024.7.

□ 따라서 명예동물보호관 운영사례를 참고하여 동물관리지도원 위촉 인원 수, 직무수행경비 지급단가 및 연간 지급일수, 사전 의무교육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가정함

- (동물관리지도원 위촉인원) 시·도는 각 4명, 시·군·구는 각 2명씩 위촉하여 총 518명이 위촉되는 것으로 가정
 - － 다만,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시·군·구와 같이 2명을 위촉하는 것으로 가정
 - － 이때, 추계기간 동안 동물관리지도원 위촉인원 수는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표 4] 동물관리지도원 위촉인원 수 가정

구분	지자체 수 (A, 개소)	지자체당 위촉인원 수 (B, 명/개소)	소계 (C=A×B, 명)
시·도	16	4	64
시·군·구 (세종시 포함)	227	2	454
합계			518

자료: 개정안 및 명예동물보호관 운영사례를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동물사랑배움터 홈페이지 > 학습하기 > 온라인 교육 > 명예동물보호관 의무교육
<<https://apms.epis.or.kr/home/kor/learn/online/view.do?menuPos=5&idx=210>>

- (직무수행경비 지급단가) 1일 최대 5만원
- (직무수행경비 연간 지급일수) 연간 최대 50일
- (사전 의무교육)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하는 것으로 가정
- (교육 프로그램 제작비용) 1식 35백만원
 - 동물사랑배움터의 명예동물보호관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비용 참고:
2023년 약 35백만원
 - 이때, 사전 의무교육 프로그램은 추계기간 첫해인 2026년에 개발하는 것으로 가정

□ 추계 결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동물관리지도원을 위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65억 1,000만원으로 추계됨

[표 5] 동물지도관리원 위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동물지도관리원 직무수행경비	인원 수(A, 명)	518	518	518	518	518	
	연간 활동일(B, 일)	50	50	50	50	50	
	1일당 수당(C, 만원/일)	5	5	5	5	5	
	소계 (D=A×B×C, 백만원)	1,295	1,295	1,295	1,295	1,295	6,475
동물지도관리원 사전 의무교육	온라인 교육프로그램 개발비(E, 백만원)	35					35
합계(F=D+E, 백만원)		1,330	1,295	1,295	1,295	1,295	6,510

주: 동 추가재정소요는 전액 지방비임

자료: 명예동물보호관 운영사례를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재량지출성 재정수반요인에 대해 일정 규모의 예산 편성을 전제로 추계한 것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이주호	배아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주호	02-6788-3746	progress@nabo.go.kr

[참고자료 1] 연도별·지역별 개물림 사고 이송 현황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방청 제출자료)

□ 연도별·지역별 개물림 사고 이송 현황

('24.3월, 단위 : 명)

구분	'15	'16	'17	'18	'19	'20	'21	'22	'23
계	1,842	2,111	2,405	2,368	2,154	2,114	2,197	2,216	2,235
서울	168	200	252	188	167	154	174	195	178
부산	69	70	82	94	70	61	73	62	53
대구	56	57	75	70	45	52	61	58	67
인천	91	92	120	128	114	116	89	105	91
광주	25	39	46	48	45	48	44	45	35
대전	48	42	43	44	55	43	44	43	45
울산	30	30	24	33	35	20	26	41	34
세종	5	18	8	16	7	10	12	18	19
경기	462	563	649	622	522	553	586	556	551
강원	112	126	126	119	134	128	158	154	141
충북	80	83	103	106	84	99	106	104	100
충남	134	141	183	180	160	157	132	152	170
전북	97	108	120	126	121	123	117	113	134
전남	113	119	144	150	159	136	150	183	153
경북	153	184	183	203	180	171	194	165	169
경남	125	157	155	163	169	151	151	147	194
제주	74	82	92	78	87	92	80	75	101

자료: 소방청

[참고자료 2] 2023년 지역별 명예동물보호관 운영 현황

(농림축산검역본부 제출자료)

□ 2023년 지역별 명예 동물보호관 위촉 및 활동 현황

(단위: 명, %, 건)

구분	명예 동물 보호관 (수)	지역별 비율	전년 대비		활동현황				
			증감	증감률	계	교육·홍보 상담·지도	학대행위 신고·정보 제공	보호관 직무 수행지원	피학대 동물 구조·보호
전국	644	100.0 %	38	6.3	4,068	2,358	93	1,285	332
					100.0%	58.0%	2.3%	31.6%	8.2%
서울	114	17.7%	9	8.6	1,148	815	28	255	50
부산	82	12.7%	8	10.8	110	76	2	32	0
대구	8	1.2%	4	100.0	—	—	—	—	—
인천	16	2.5%	4	33.3	14	12	0	0	2
광주	28	4.3%	4	16.7	185	185	0	0	0
대전	15	2.3%	-1	-6.3	2	2	0	0	0
울산	6	0.9%	-3	-33.3	43	41	2	0	0
세종	10	1.6%	0	0	4	2	0	2	0
경기	169	26.2%	-1	-0.6	1088	317	9	720	42
강원	43	6.7%	15	53.6	460	396	0	11	53
충북	15	2.3%	4	36.4	30	18	0	2	10
충남	30	4.7%	-1	-3.2	213	99	4	25	85
전북	42	6.5%	3	7.7	219	130	8	61	20
전남	28	4.3%	3	12.0	350	216	28	47	59
경북	1	0.2%	1	0	32	6	9	7	10
경남	23	3.6%	-11	-32.4	142	16	3	122	1
제주	14	2.2%	0	0	28	27	0	1	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 「2023년 동물의 등록, 구조·보호 등 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 2024.7.